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14호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최고액 정산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의결 및 서면심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위원회 운영 지원(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chemi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